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윤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616

발의연월일: 2024. 11. 15.

발 의 자 : 김 윤 · 서미화 · 박해철

박희승 • 박지원 • 박홍배

윤종오 • 문진석 • 정혜경

이광희 • 문금주 • 전진숙

이개호 • 전종덕 • 강준현

김남근 • 남인순 • 서영석

백혜련 • 이수진 • 장종태

의원(21인)

제안이유

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시장에 맡겨진 비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함.

그러나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는 공공보건의료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고,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체계가 부재한 상황임. 또한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부족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시설·장비·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공공보건의료 역량 자체가 열악한 상황임.

이에 진료권 중심의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기전을 마련하고, 각 의

료전달체계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보편적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 으로써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함.

주요내용

- 가. 보건복지부장관과 시·도지사가 진료권 중심으로 공공보건의료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계획 수립, 계획의 심의·의결 및 평가에 대한 과정을 명시함(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등).
- 나.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로 명시하고, 시·도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함. 중앙 공공보건의료지원센 터는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, 시·도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는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지원 업무를 하도록 함(안 제21조 및 제22조).
- 다. 진료권 중심의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취약지를 진료권 단위로 지정하도록 하고, 거점의료기관과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함(안 제12조의2 신설 등).
- 라.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참여 민간의료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, 이사회를 구성할 때에는 공익위원 을 임명하도록 함(안 제7조의2 및 제13조의2 신설).
- 마.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, 수가가산과 재정 지원을 하도록

함(안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6까지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 법안」(의안번호 제1617호),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5615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 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호자목을 차목으로 하며,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호마목 중 "보건 의료기관 중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"을 "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"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3. "공공보건의료기관"이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.
 - 가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(이 하 "공공단체"라 한다)가 설립·운영하는 의료기관
 - 나. 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, 보건의료원, 보건지소 및 건강 생활지원센터
 - 다.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보건진료 소
 - 라.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 한 목적으로 하여 설립·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
 - 자. 제7조의2에 따른 공익참여 민간의료기관
- 6. "진료권"이란 의료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충족하는 의료생활권으로

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구, 의료이용 접근성, 의료기관 기능 유형에 따른 자체충족률을 고려하여 대·중·소 진료권을 구분하여 지정·고시하는 행정구역의 묶음을 말한다.

제3조제3항 중 "시행할 수 있다"를 "시행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할 수 있다"를 "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제4조제1항 중 "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"을 "진료권을 기반으로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7호를 제13호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8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.

- 5. 진료권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역할 및 운영계획
- 8. 진료권 공공보건의료기관 재정지원 추진계획 및 방법
- 9. 제5조의3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성과평가 및 제15조에 따른 공공 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평가
- 10.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 세출 및 제22조의5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정책수가 가산에 관한 사항
- 11.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효율적 운영 및 협력 연계 계획
- 12.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3조의3에 따른 공 중보건의사의 수급관리 및 실태조사
-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·도지사 및 공

공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보건의료 기본 계획의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4조의2(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) ① 시·도지사는 양질의 공공보건의 료를 제공하고 진료권별 공공보건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4 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보건의료 시행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진료권 단위로 공공보건의 료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진료권별 공공보건의료 목표. 세부 계획 및 추진방안
 - 2. 진료권별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그 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운영 계획
 - 3. 진료권별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확충 계획
 - 4. 공익참여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사업 수요・공급 조정
 - 5. 제22조의3에 따른 자금지원 재원 사용・배분 계획
 - 6. 진료권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 계획
 - 7. 진료권 내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계획
 - 8. 제5조의3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성과평가 및 제15조에 따른 공공

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

- 9. 공중보건의사의 전문과목과 소진료권 유형에 따른 배치기준 10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③ 시·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제5조의2에 따른 시·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, 제5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그 시행계획을 최종적으로 심의한다.
- ④ 시·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·평가하고, 그 결과를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⑥ 시·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분석·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- ①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추진실적의 분석·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.
- 제4조의3(실태조사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진료권을 기반으로 3년마다 공공보건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- 1. 대·중·소 진료권별 인구수 및 의료수요 대비 공공보건의료 병 상·인력·시설 등 공급의 적정성
- 2.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확충이 필요한 진 료권 현황
- 3.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질 개선 현황
- 4. 국민의 보편적 의료이용 현황
- 5. 공익사업 수요 및 공급 현황, 향후 추계
- 6. 인구 수, 성별·연령별 인구 분포, 소득 등에 따른 진료권 내 의료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
- 7.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한 의료기관 접근성에 관한 사항
- 8.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 및 경영실태에 관한 사항
- 9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사항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, 그 밖의 관련 법인·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·방법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5조제1항 중 "심의하기"를 "심의·의결하기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4호를 제8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심의한다"를 "심의·의결한다"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를 제8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"분과위원회"를 "다 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"로 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-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자단체, 노동자단체 및 시민단체에서 추 천하는 사람
- 3. 「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립중 앙의료원의 원장
- 4. 「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」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및 「국립대학병원 설치법」에 따른 국립대학병원의 원장 중 대표자
- 5. 권역별로 설치·운영되며,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보건의료 기관의 장 중에 대표자
- 6.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방의료원의 원장 중 대표자
- 7. 「지방자치법」 제182조에 따른 시·도지사협의체 대표
- 5.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6. 공익적 적자 계측 기준 및 방법
- 7. 시·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한 사항. 이 경우 심의 위원회는 심의만 한다.

- 1. 국공립대학병원 및 국공립대학치과병원 운영 분과위원회
- 2. 지방의료원 운영 분과위원회
- 3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분과위원회
 제5조의2제1항 중 "심의하기"를 "심의·의결하기"로 하고, 같은 조 제
 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 및
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2항)제3
 호 및 제4호 중 "지역"을 각각 "진료권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를
 제8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.
 - ② 시·도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③ 시·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·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 - 1. 중진료권별 시장・군수・구청장 중 대표자
 - 2. 대진료권별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의 장 중 대표자
 - 3.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 중 대표자
 - 4.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장 중 대표자
 - 5. 보건의료관련 환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
 - 6. 보건의료관련 노동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
 - 7. 보건의료관련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
 - 8.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- 9. 시 · 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장
- 5. 제5조의3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
- 6. 제15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
- 7.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5조에 따른 공중보 건의사의 배치기관과 시설
- 제2장에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5조의3(공공보건의료 성과평가)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·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의 강화를 위하여 진료권별 공공보건의료수요, 공공병 상·인력·시설의 공급 등에 관한 공공보건의료 성과를 평가하고,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
 - ② 성과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인구수·의료수요 대비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그 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병상·인력·시설 등의 적정성
 - 2. 진료권 기반 국민의 보편적 의료이용 및 의료질 개선에 관한 사항
 - 3. 시·도별 진료권 중심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대한 사항
 - 4.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운영 및 경영에 관한 사항
 - 5.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진료권 내 공공보건의료 강화에 관한사항
 - 6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 -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·도지사는 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

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업무 수행상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.

-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시·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시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
- ⑤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성과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7조의2(공익참여 민간의료기관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사회에서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의료 기관을 공익참여 민간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 - ② 공익참여 민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민간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 - ③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익참여 민간의료기관이 시·도지사가 수립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 -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공익참여 민간의료기관이 공익사업 또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.
 - ⑤ 그 밖에 공익참여 민간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· 방법 및 절차 등

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.

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평가"를 "진료권별로 평가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지역"을 "진료권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.

제12조의2 및 제1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2조의2(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충)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·도지사는 제12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의료취약지(이하 "의료취약지"라 한다)에 대하여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 도록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신축·증축·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충하여야 한다.
 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취약지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보건의료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1. 보건의료 인력의 공급에 대한 지원
 - 2.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(이하 "의료기관"이라 한다)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비용의 보조 등
 - ③ 그 밖에 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3조의2(공익참여 민간의료기관 등의 이사회 구성) ① 공익참여 민 간의료기관 및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이 사회를 구성하는 경우 시·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

사람이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.

- 1.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 전문가
- 2. 지역사회 주민 또는 환자의 권익을 대표하는 사람
- 3.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(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 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중에서 근로자대표 (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
- ③ 공익참여 민간의료기관 및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는 「의료법」 제48조의2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의료법인"은 "공익참여 민간의료기관" 또는 "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"으로 본다.
- ④ 그 밖에 공익참여 민간의료기관 및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이사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.
- 제15조의 제목 중 "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"를 "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-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참여 민간의료기관,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, 공공전문진료센터 및 책임의료기관 등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시행계획의 수행 결과를 평가하여

- 야 한다. 이 경우 평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1. 진료권 중심 국민의 보편적 의료이용 및 의료질 개선에 관한 사항
- 2. 진료권 맞춤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적정 공급에 관한 사항
- 3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 제7조제1항·제2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건의료를 제공할 때 발생한 경영상의 손해를 제1항에 따른 평가에 불리하게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해당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의 장과 해당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재정적·행정적 지원을 다르게 할 수 있다.

제20조제3항 중 "할 수 있다"를 "하여야 한다"로 한다.

제21조의 제목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" 를 각각 "중앙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"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8호(종전의 제6호) 중 "제15조제1항에"를 "제15조에"로, "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"를 "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"으로 하며, 같은 항 제9호(종전의 제7호) 중 "공공보건의료 지원단"을 "시·도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"로

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"를 "중앙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"로, "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"를 "「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에"로, "지원할 수 있다"를 "지원하여야 한다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"를 "중앙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"로 한다.

- 6. 제5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업무 지원
- 7. 제5조의3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성과평가 시행 및 분석 제22조의 제목 중 "공공보건의료 지원단"을 "시·도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"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업무"를 "다음 각 호의 업무"로, "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"를 "시·도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"로 하며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"공공보건의료 지원단"을 각각 "시·도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"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공공보건의료 지원단"을 "시·도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"로, "할 수 있다"를 "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공공보건의료 지원 단"을 "시·도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"로 한다.
 - 1.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진료제공 지원
 - 2.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연계 협력 및 업무 지원
 - 3. 제4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 지원
 - 4. 제5조의3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성과평가 및 제15조에 따른 공공

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평가 지원

- 5. 진료권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교류ㆍ협력 지원
- 6. 진료권 특성 맞춤 공공보건의료 사업 발굴
- 7. 진료권 공공보건의료 관련 정책 개발 및 연구
- 8. 시 · 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지원
- 9. 공공보건의료 종사자 교육, 훈련 지원
- 10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4장의2(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6까지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장의2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지원

- 제22조의2(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) ①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용 관리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「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지역·필수의료기금
 - 2.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
 - 3. 일반회계,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- 제22조의3(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 세출) ①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제3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

- 운영
- 2. 제7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 우선 제공
- 3. 제7조의2에 따른 공익참여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
- 4.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에 대한 지원
- 5. 제14조에 따른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지원
- 6. 제14조의2에 따른 책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
- 7. 제5조의3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성과평가 및 제15조에 따른 공공 보건의료 수행기관 평가에 따른 지원
- 8. 제21조에 따른 중앙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및 제22조에 따른 시
•도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
- 9.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중보건 위기 상황 시 대응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
- 10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사항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경우지역의 인구수, 사회경제적 상황, 지역의 필수의료 취약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제22조의4(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재원)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·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.
 - 1. 제3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

- 운영
- 2. 제7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 우선 제공
- 3. 제7조의2에 따른 공익참여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
- 4.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에 대한 지원
- 5. 제14조에 따른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지원
- 6. 제14조의2에 따른 책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
- 7. 제5조의3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성과평가 및 제15조에 따른 공공 보건의료 수행기관 평가에 따른 지원
- 8. 제21조에 따른 중앙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 및 제22조에 따른 시·도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에 대한 지원
- 9.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중보건 위기 상황 시 대응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
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1. 「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지역 필수의료기금
- 2.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
- ③ 제1항제9호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은 「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」 제18조에 따른 시·도필수의료위원회에서 회복이 되었다 고 판단할 때까지 지원한다.
- ④ 그 밖의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제22조의5(공공보건의료정책수가 가산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권

단위의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정책수가를 가산하여야 한다.

- ② 공공보건의료정책수가의 가산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- 성과 가산: 진료권 중심 국민의 보편적 의료이용 및 의료질 개선
 에 관한 사항
- 2. 공공보건의료정책가산: 시·도위원회에서 결정한 각 진료권별 공 익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제공 가산
- 3.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 가산: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 지정 공공보 건의료 가산
- 4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정책수가 가산기준을 정할 때 제5조의3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성과평가 및 제15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에 차등을 둘 수 있다.
- ④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정책수가의 가산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한다.
- 제22조의6(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공익적 적자 계측) ①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는 제2조제4호가목·나목·다목·마목·바목·사목·아 목·자목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 공공보건의료사업 등 공공보 건의료를 제공하면서 발생한 공익적 적자를 계측하여 그 적자를 전 부 지원하여야 한다.
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적 적자 계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,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업무 수행상의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,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공익적 적자 계측 방법,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(정의) ------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• 2. (생략) 1. · 2. (현행과 같음) 3. "공공보건의료기관"이란 공 3. "공공보건의료기관"이란 국 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 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(이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하 "공공단체"라 한다)가 공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. 공보건의료의 제공을 주요한 가.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 목적으로 하여 설립・운영하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는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. 공공단체(이하 "공공단체" 라 한다)가 설립 · 운영하 는 의료기관 나. 「지역보건법」에 따른 보건소, 보건의료원, 보건 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 다.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보건진료소 라.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의 제 공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 <u>여 설립 ·</u> 운영하는 보건의

료기관

4. "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"이 란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기 관을 말한다.

가. ~ 아. (생 략)

<신 설>

<u>자.</u> (생 략)

5. "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"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 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 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보건의료기관 간의 역할 수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 다.

가. ~ 라. (생 략)

마.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제 외한 <u>보건의료기관 중 공</u> 공보건의료 수행기관

<신 설>

4.	
	가. ~ 아. (현행과 같음)
	자. 제7조의2에 따른 공익참
	여 민간의료기관
	<u>차.</u> (현행 자목과 같음)
5.	
	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
	마
	<u>공공보건의료 수행기</u>
	관
<u>6.</u>	"진료권"이란 의료서비스를
	자체적으로 충족하는 의료생
	활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
	인구, 의료이용 접근성, 의료
	기관 기능 유형에 따른 자체
	충족률을 고려하여 대・중・
	소 진료권을 구분하여 지정・
	고시하는 행정구역의 묶음을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 무) ①·② (생 략)
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 공보건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「의료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확보에 필요한 시책 을 시행할 수 있다.
-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 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 료 전달체계 구축·운영을 추 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여 야 하며, 공공보건의료 수행기 관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· 행정적 지원을 <u>할 수 있다</u>.

제4조(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) ①
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에게 양
질의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기
위하여 제5조에 따른 공공보건
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
거쳐 「보건의료기본법」 제15
조에 따른 보건의료발전계획과
연계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본계
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,
이를 기초로 매년 주요 시책

<u>말한다.</u>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
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
시행하여야 한다.
4)
(4)
<u>하여야 한다</u> .
제4조(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) ①
진료권을 기반으로
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

추진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(이하 "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"이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.

1. ~ 4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5. • 6. (생략)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u>.</u>
2
(2) 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=
•

- 1. ~ 4. (현행과 같음)
- 5. 진료권 공공보건의료 수행기 관의 역할 및 운영계획
- 6.·7. (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)
- 8. 진료권 공공보건의료기관 재 정지원 추진계획 및 방법
- 9. 제5조의3에 따른 공공보건의 료 성과평가 및 제15조에 따 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평가
- 10. 제22조의3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세출 및 제22조의5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정책수가 가산에관한 사항
- 11.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

 효율적 운영 및 협력・연계

 계획

7. (생략)

③ (생 략)

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공 공단체의 장과 시·도지사는 매년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 · 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 우 시・도지사는 제5조의2에 따른 시 · 도공공보건의료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.

공단체의 장과 시 · 도지사는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시 ○ <삭 제> 행계획의 수립·시행 및 추진 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12.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 한 특별조치법」 제3조의3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수급관 리 및 실태조사

13. (현행 제7호와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 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・ 도지사 및 공공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공|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보건의 료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조의2(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)
① 시·도지사는 양질의 공공
보건의료를 제공하고 진료권별
공공보건의료 격차를 해소하기
위하여 제4조에 따른 공공보건
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
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수립・
시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진료
권 단위로 공공보건의료 시행
계획을 수립・시행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
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
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
이 포함되어야 한다.

- 1. 진료권별
 공공보건의료
 목

 표, 세부
 계획
 및 추진방안
- 2. 진료권별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그 외 공공보건의료 수행 기관의 운영 계획
- 3. 진료권별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확충 계획
- 4. 공익참여 민간의료기관의 공 익사업 수요·공급 조정
- 5. 제22조의3에 따른 자금지원 재원 사용·배분 계획

- 6. 진료권 내 공공보건의료 협 력 및 육성 계획
- 7. 진료권 내 공공보건의료 시 책 및 사업의 조정 계획
- 8. 제5조의3에 따른 공공보건의 료 성과평가 및 제15조에 따 른 공공보건의료 사업 시행평 가에 관한 사항
- 9. 공중보건의사의 전문과목과 소진료권 유형에 따른 배치기 준
- <u>10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</u> <u>정하는 사항</u>
- ③ 시·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거나 변경하는 경 우 제5조의2에 따른 시·도공 공보건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야 하며, 제5조에 따른 공공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그 시행계획을 최종적으로 심의한 다.
- ④ 시·도지사는 전년도 시행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보건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.

5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분석・평가하고, 그 결과를 시 ·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⑥ 시·도지사는 제5항에 따른 분석・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 ⑦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・ 시행 및 추진실적의 분석・평 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4조의3(실태조사) ① 보건복지 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의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진료권을 기반으로 3년마다 공 공보건의료 실태조사를 실시하 고,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 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야 한다.
- 1. 대・중・소 진료권별 인구수

 및 의료수요 대비 공공보건의

 료 병상・인력・시설 등 공급

- 의 적정성
- 2.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의료취 약지 거점의료기관 확충이 필 요한 진료권 현황
- 3.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 건의료질 개선 현황
- 4. 국민의 보편적 의료이용 현 황
- 5. 공익사업 수요 및 공급 현황, 향후 추계
- 6. 인구 수, 성별·연령별 인구 분포, 소득 등에 따른 진료권 내 의료이용 실태에 관한 사 항
- 7.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한 의료기관 접근성에 관한 사항
- 8.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 및 경영실태에 관한 사항
- 9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「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 른 공공기관의 장, 그 밖의 관

제5조(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 회) 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공공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②・③ (생략)
-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- 1. (생략)
- 2.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 하는 사람
- 3.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

런 법인 • 단체에 대하여 필요
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
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
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
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
내용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
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
<u>다.</u>
5조(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
ই]) ①
<u>심의·의결하기</u>
②・③ (현행과 같음)
4
1. (현행과 같음)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자단
체, 노동자단체 및 시민단체
에서 추천하는 사람

3. 「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

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4. (생략)

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사항을 심의한다.

1. ~ 4. (생략)

<u><신 설></u>

<신 설>

<신 설>

국립중앙의료원의 원장

- 4. 「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」 에 따른 서울대학교병원 및 「국립대학병원 설치법」에 따른 국립대학병원의 원장 중 대표자
- 5.
 권역별로 설치・운영되며,

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

 보건의료기관의 장 중에 대표

 자
- 6. 「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방의료원의 원장 중 대표자
- 7. 「지방자치법」 제182조에 따른 시·도지사협의체 대표 8. (현행 제4호와 같음)
- ⑤ -----심의·의결한다.
- 1. ~ 4. (현행과 같음)
- 5.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
- 6. 공익적 적자 계측 기준 및 방법
- 7. 시·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 서 심의·의결한 사항. 이 경 우 심의위원회는 심의만 한 다.

<u>5.</u> (생 략)

⑥ (생략)

⑦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<신 설>

<<u>신</u> 설> <신 설>

⑧ (생략)

제5조의2(시·도공공보건의료위 원회) 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·광역시·도·특별자치 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에 시 ·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(이하 "시·도위원회"라 한다)를 둔 다.

<신 설>

<신 설>

<u>8.</u> (현행 제5호와 같음)
⑥ (현행과 같음)
⑦
- <u>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</u>
·.
1. 국공립대학병원 및 국공립대
학치과병원 운영 분과위원회
2. 지방의료원 운영 분과위원회
3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
고 인정하는 분야의 분과위원
<u>ই</u>
 ⑧ (현행과 같음)
제5조의2(시·도공공보건의료위
원회) ①
심의·의결하기-

② 시・도위원회는 공동위원장
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
위원으로 구성한다.
③ 시・도위원회의 위원은 다
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ㆍ

② 시·도위원회는 해당 시· 도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1. 2. (생략)
- 및 육성에 관한 사항

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- 1. 중진료권별 시장・군수・구 청장 중 대표자
- 2. 대진료권별 대학병원 등 종 합병원의 장 중 대표자
- 3.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 중 대표자
- 4.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장 중 대표자
- 5. 보건의료관련 환자단체의 추 천을 받은 사람
- 6. 보건의료관련 노동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
- 7. 보건의료관련 시민단체의 추 천을 받은 사람
- 8.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9. 시 · 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

<u>4</u>)	 	 	 	 	 	 	
	 	 	 	 	 	 	-

- 1. 2. (현행과 같음)
- 3. <u>지역</u>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| 3. <u>진료권</u>-----
- 4. <u>지역</u> 내 공공보건의료 시책 4. <u>진료권</u>-----

및 사업의 조정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 5. (생 략)

 ③ (생 략)

 <신 설>

- _____
- 5. 제5조의3에 따른 공공보건의 료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
- 6. 제15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사항
- 7.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5조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의 배치기관과 시설
- 8. (현행 제5호와 같음)
- ⑤ (현행 제3항과 같음)

제5조의3(공공보건의료 성과평가)

-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·도지 사는 공공보건의료의 강화를 위하여 진료권별 공공보건의료 수요, 공공병상·인력·시설의 공급 등에 관한 공공보건의료 성과를 평가하고, 그 결과를 공 개하여야 한다.
 - ② 성과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인구수·의료수요 대비 공공 보건의료기관 및 그 외 공공 보건의료 수행기관의 병상· 인력·시설 등의 적정성

- 2. 진료권 기반 국민의 보편적

 의료이용 및 의료질 개선에

 관한 사항
- 3. 시·도별 진료권 중심 공공 보건의료 확충에 대한 사항
- 4.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운영 및 경영에 관한 사항
- 5.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진 료권 내 공공보건의료 강화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·도지 사는 성과평가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의 제출이나 업무 수행상의 협 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 하여야 한다.
-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시·도지 사는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 한 재정 지원 시 성과평가 결

과를 반영하여야 한다.

⑤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성과 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제7조의2(공익참여 민간의료기관)

-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사회에서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를 제공하고 있는 민간의료기관을 공익참여민간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있다.
- ② 공익참여 민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민간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야 한다.
- ③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익참여 민간의료기관이 시·도지사가 수립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사업을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.
 ④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공익참여 민간의료기관이 공익사업 또는 공공보건의관시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

제12조(의료취약지의 지정・고시) 저

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주기적으로 국민의 의료 이용 실태 및 의료자원의 분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<u>평가</u>・분석하여야 한다.

- 1. ~ 4. (생 략)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·분석 결과 의료서 비스의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 한 지역을 의료취약지로 지정 ·고시할 수 있다.
- ③ (생 략)
-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의료취약지 (이하 "의료취약지"라 한다)에 대하여 보건의료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- 1. 보건의료 인력의 공급에 대 한 지원

<u> </u>
⑤ 그 밖에 공익참여 민간의료
기관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
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
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에12조(의료취약지의 지정·고시)
①
진료권별로
평가
1. ~ 4. (현행과 같음)
2
진료권
③ (현행과 같음)
<u><</u> 삭 제>

하여야 한다.

2.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(이하 "의료기관"이라한다)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비용의 보조 등

<u>⑤</u> (생 략)

<신 설>

④ (현행 제5항과 같음)

제12조의2(의료취약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충) ① 보건복지 부장관과 시·도지사는 제12조에 따라 지정·고시된 의료취약지"라 한다)에 대하여 보건의료 공급이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신축·증축·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충하여야 한다.
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취약 지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보건 의료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- 1. 보건의료 인력의 공급에 대

 한 지원
- 2.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(이하 "의료기관"이라한다)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비용의 보조 등

- ③ 그 밖에 의료취약지 공공보 건의료기관의 확충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.
- 제13조의2(공익참여 민간의료기 관 등의 이사회 구성) ① 공익 참여 민간의료기관 및 의료취 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이사회를 구성하는 경우 시·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이사회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.
 - 1.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 전문

 가
 - 2. 지역사회 주민 또는 환자의

 권익을 대표하는 사람
 - 3.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(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 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중 에서 근로자대표(근로자의 과 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 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

제15조(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 결과 평가) ① 보건복지부장관 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, 기관에 대하여 공공보건의료사 업의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 다.

자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 의를 받은 사람

③ 공익참여 민간의료기관 및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의 이사회 구 성에 대해서는 「의료법」 제4 8조의2를 준용한다. 이 경우 "의료법인"은 "공익참여 민간 의료기관" 또는 "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"으로 본다.

④ 그 밖에 공익참여 민간의료 기관 및 의료취약지 거점의료 기관의 이사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다.

제15조(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평가) ① 보건복지부장관 은 공익참여 민간의료기관, 의 공공전문진료센터 및 책임의료 로취약지 거점의료기관, 공공전 문진료센터 및 책임의료기관 등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시행계획의 수행 결과를 평가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평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
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, 공공전문진료센터 또는 책임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·행정적 지원을 다르게 할 수 있다.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취약 지 거점의료기관, 공공전문진료 센터 또는 책임의료기관의 효 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표하거나 평가결과와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- 야 한다.
- 1. 진료권 중심 국민의 보편적

 의료이용 및 의료질 개선에

 관한 사항
- 2. 진료권 맞춤 공공보건의료사 업의 적정 공급에 관한 사항
- 3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 의료 수행기관이 제7조제1항· 제2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건의료를 제공할 때 발생 한 경영상의 손해를 제1항에 따른 평가에 불리하게 반영하 여서는 아니 된다.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해당 공공보 건의료 수행기관의 장과 해당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 소속 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공공보 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재정

④ (생 략)

- 제20조(교육·훈련 등) ①·② (생 략)
 -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교육· 훈련센터의 운영을 공공보건의 료기관에 위탁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·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④ (생략)

- 제21조(<u>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</u>의 설치·운영) ① 보건복지부장 관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 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 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<u>공공</u> 보건의료 지원센터를 설치·운 영할 수 있다.
 - 1. ~ 4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<신 설>

6.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 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7.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공보

<u>적·행정적 지원을 다르게 할</u>
<u>수 있다.</u>
<u>⑤</u> (현행 제4항과 같음)
제20조(교육・훈련 등) ①・②
(현행과 같음)
③
<u></u> কূ
여야 한다.
④ (현행과 같음)
제21조(중앙 공공보건의료 지원
<u>센터</u> 의 설치·운영) ①
-중앙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-
1. ~ 4. (현행과 같음)
6. 제5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
정책심의위원회의 업무 지원
7. 제5조의3에 따른 공공보건의
료 성과평가 시행 및 분석
<u>8. 제15조에공공보건의료</u>
수행기관에 대한
<u> 9.</u> <u>시·도</u>

건의료 지원단 간의 교류·협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-----력 지원------

8. (생략)
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<u>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</u>의 운영을 <u>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</u> 위탁하고,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<u>공</u> <u>공보건의료 지원센터</u>의 설치, 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필 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.
- 제22조(<u>공공보건의료 지원단</u>의 설치·운영) ① 시·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<u>업무</u> 수 행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<u>공</u> 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설치·운 영할 수 있다.

<신 설>

<u>10.</u> (현행 제8호와 같음)
②
중앙 공공보건의료 지원
센터「국립중앙의료
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
률」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에
기원
하여야 한다.
③ <u>중</u>
앙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
제22조(시·도 공공보건의료 지
<u> 원센터</u> 의 설치·운영) ①
다 이 가 중이 어디
<u>다음 각 호의 업무</u>
<u>시·도 공</u>
공보건의료 지원센터를 설치·
<u> 운영하여야 한다</u> . 1 고고버거이크 스체기과 지크
1.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진료 제공 지원
<u>세등 시천</u> 2.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연계

<u><신 설></u>

<신 설>

②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나 공 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, 그 밖에 공공보건의 료 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

협력 및 업무 지원

- 3. 제4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 지원
- 4. 제5조의3에 따른 공공보건의 료 성과평가 및 제15조에 따 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한 평가 지원
- 5. 진료권 내 공공보건의료기관 교류·협력 지원
- 6. 진료권 특성 맞춤 공공보건 의료 사업 발굴
- 7. 진료권 공공보건의료 관련정책 개발 및 연구
- 8. 시·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지원
- 9. 공공보건의료 종사자 교육, 훈련 지원
- 10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- 2 -----
- 시 · 도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
- _____
- 시·도 공공보건의료 지원센터

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·도지사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-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<u>공공보건의료 지원단</u>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재정적·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<u>공공보건의료 지원</u> 단의 설치, 운영 및 운영의 위 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③
<u>시·도 공공보건의료 지원</u>
센터
 하여야 한다.
<u> </u>
시·도 공공보건의료
지원센터
<u> </u>
제4장의2 공공보건의료 강화를
<u>위한 지원</u>
제22조의2(공공보건의료 강화를
위한 특별회계 설치) ① 공공
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특별
회계를 설치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는
보건복지부장관이 운용・관리
<u>한다.</u>
③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의
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「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

- 별법」에 따른 지역·필수의 료기금
- 2.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
- 3. 일반회계, 다른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
- 제22조의3(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 세출) ① 공공 보건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회 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 다.
 - 1. 제3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・운영
 - 2. 제7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기관의 보건의료 우선 제공
 - 3. 제7조의2에 따른 공익참여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
 - 4.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에 대한 지원
 - 5. 제14조에 따른 공공전문진료 센터에 대한 지원
 - 6. 제14조의2에 따른 책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
 - 7. 제5조의3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성과평가 및 제15조에 따

<u>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평</u> <u>가에 따른 지원</u>

- 8. 제21조에 따른 중앙 공공보 건의료 지원센터 및 제22조에 따른 시·도 공공보건의료 지 원센터에 대한 지원
- 9.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중보건 위기 상황 시 대응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
- 10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 공공보건의료 강화를위한 사항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 항에 따라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경우 지역의 인구수, 사회경제적 상황, 지역의 필수의료 취약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. 제22조의4(공공보건의료 강화를위한 재원)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·도지사는 다음 각호의사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.
 - 1. 제3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・운영
 - 2. 제7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

- 기관의 보건의료 우선 제공
- 3. 제7조의2에 따른 공익참여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
- 4.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에 대한 지원
- 5. 제14조에 따른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지원
- 6. 제14조의2에 따른 책임의료기관에 대한 지원
- 7. 제5조의3에 따른 공공보건의 료 성과평가 및 제15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평가에 따른 지원
- 8. 제21조에 따른 중앙 공공보 건의료 지원센터 및 제22조에 따른 시·도 공공보건의료 지 원센터에 대한 지원
- 9.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중보건 위기 상황 시 대응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
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 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 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1. 「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지역·필수의 료기금

- 2. 「국민건강증진법」에 따른 국민건강증진기금
- ③ 제1항제9호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은 「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법」 제18조에 따른 시·도필수의료위원회에서 회복이 되었다고 판단할 때까지 지원한다.
- ④ 그 밖의 재원 마련에 관한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.
- 제22조의5(공공보건의료정책수가 가산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진 료권 단위의 공공보건의료 강 화를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수 행기관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정 책수가를 가산하여야 한다.
 - ② 공공보건의료정책수가의 가 산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한다.
 - 1. 성과 가산: 진료권 중심 국

 민의 보편적 의료이용 및 의

 료질 개선에 관한 사항
 - 2. 공공보건의료정책가산: 시· 도위원회에서 결정한 각 진료

<u>권별 공익사업 및 공공보건의</u> <u>료 제공 가산</u>

- 3.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 가산: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 지정 공공보건의료 가산
- 4.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-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정책수가 가산기준을 정할 때 제5조의3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성과평가 및 제15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급에 차등을 둘수 있다.
- ④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정책 수가의 가산에 관한 사항은 보 건복지부렁으로 정한다.

제22조의6(공공보건의료 수행기 관의 공익적 적자 계측) ①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제4 호가목・나목・다목・마목・바 목・사목・아목・자목의 공공 보건의료 수행기관이 공공보건 의료사업 등 공공보건의료를 제공하면서 발생한 공익적 적 자를 계측하여 그 적자를 전부

지원하여야 한다.

-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적적자 계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,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업무 수행상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,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공익적 적자 계측 방법,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